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6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의자 :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고령, 장애, 정신적·신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가족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 다. 실태조사 등,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등(안 제6조~제8조)
-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

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